

시 민

문서번호	안전지원과-11270
결재일자	2024. 5. 22.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소방장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최태호	代김정희	05/22 윤득수
협 조		

SEOUL M! SO^UNG

- 직무특성상 정신건강 장애 발생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방공무원 건강회복 지원을 위한 -
2024년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 운영 계획



2024. 5.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사전 검토항목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 완료	해당 없음	비 고
1.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2. 약자와의 동행				
목 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 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 직무특성상 정신건강 장애 발생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방공무원 건강회복 지원을 위한 -
2024년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 운영 계획

각종 현장에서 정신건강 장애 발생 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하여 정신건강진단을 통하여 고위험군을 조기에 발견하고 지속적 관리 추진하고 함

I 추진근거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0조(소방공무원 건강관리)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5장(건강진단)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8조의3
- 안전지원과-2872호('24.2.2.)「2024년도 소방공무원 심신건강관리 기본계획」
- 안전지원과-4025호('24.2.20.)「2024년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운영 계획」

II 추진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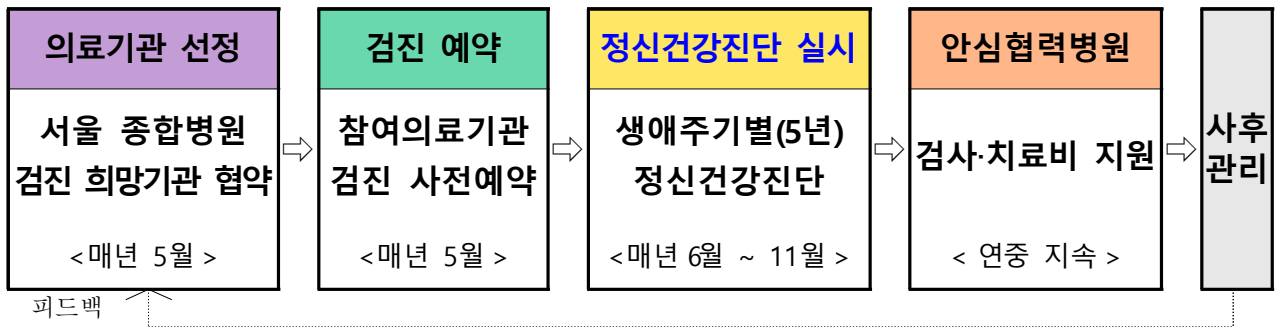
- 각종 재난현장 활동에 빈번하게 노출되어 있는 소방공무원 전 직원 정신질환 발생 위험 대비 수시건강진단 실시
- 소방공무원 전 직원 생애주기(5년)별 정신건강진단을 통한 건강보호 강화
- '치료'중심체계에서 주기적 정신건강진단으로 예방·조기발견 ⇨ 치료 ⇨ 재활·일상회복 단계 맞춤형 관리로 정신건강관리체계 강화
- 설문조사 및 정신과 전문의 상담·진료를 통한 공·사상 입증 등 결과 활용
- 선별된 고위험군에 대한 행정적·조직적 보호 대책 마련 시행

Ⅲ 추진개요

□ 개 요

- 사업명 : 소방공무원 생애주기(5년)별 정신건강진단 사업
- 기간 : 매년 5월 ~ 11월
- 대상 : 재직 중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5년) 검진 * 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 내용 : 전 직원 정신건강 검진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추적관리, 병원 연계 치료 등 사후관리 강화
- 소요예산 : 소방공무원 수시건강진단 예산 활용
- 예산과목 : 소방활동 안전 및 보건 강화 / 후생복지 지원 / 사무관리비
- 사업부서 : 본부 안전지원과(안전보건팀)
- 정신건강 지원 체계도

* 검진기관 일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연간 건강검진 운영일정

추진사항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세부시행일정		세부시행 계획수립				생애주기별 정신건강검진							
			소방공무원 특수건강진단										
			수시/정밀 건강진단 및 사후관리									결과 보고	

IV 2024년 운영개요

□ 운영개요

○ 기 간 : 2024. 6. 10. ~ 11. 30. / 6개월 간 * 5월 사전 예약 진행

○ 대 상 : 2024년 검진 대상 및 소방업무 중 정신질환 발생 우려자*

*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별표 2에 의거 각종 사망사고, 기타 정신적 질환 발생위험으로 수시건강진단이 필요한 자

* 2024년 4.30.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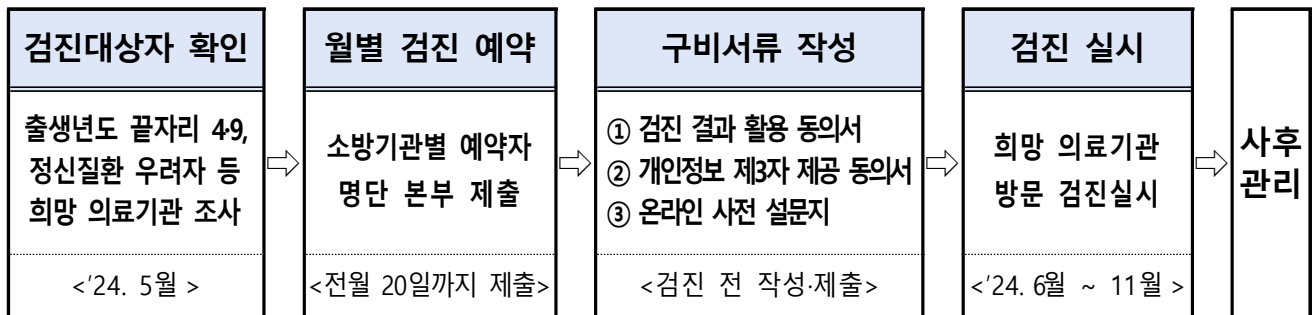
구 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출생년도(끝자리)	4·9년생	5·0년생	1·6년생	2·7년생	3·8년생
인 원	1,424명	1,594명	1,563명	1,429명	1,422명

- 휴직자, 공로연수자 제외 * 복직·신규임용 등에 따라 대상인원 변동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공 및 검진 결과 활용 미동의자는 정신건강진단 대상자에서 제외

○ 사 업 비 : 소방공무원 수시건강진단 예산 활용 * 2024년 297백만원

- (예산과목) 소방활동 안전 및 보건 강화 / 후생복지 지원 / 사무관리비

○ 운영체계도



□ 검진기관 선정

○ 선정방법

- 신속한 상담, 검사, 진료(타(他)과 진료연계 포함) 연계를 위하여 서울 종합병원급이상 의료기관 43개 지정기관 중('24. 4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기준) 소방공무원 건강검진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관중 선정하여 업무협약 진행 * 소방공무원 특수건강검진 의료기관 선정방식과 동일

○ **협약내용**

- 정신건강진단을 통한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추적관리 등 사후관리
- 정신건강 상담·검사·진료(타(他)과 진료연계 포함) 등 신속 진료 지원
- 소방공무원 외상 후 스트레스, 자살 예방 등 교육지원
- 소방공무원 정신건강 전문 진료 및 질환 관련 분석 등 연구 지원

○ **2024년 업무협약 의료기관 현황**

연번	기관명	대표번호	소재지	비고
1	경희대학교병원	02-958-8114	동대문구 경희대로 23	소방재난본부 119안심협력 지정병원
2	국립중앙의료원	02-2260-7114	중구 을지로 245	
3	한림대학교한강성심병원	02-2639-5114	영등포구 버드나루로7길 12	

□ **운영방법**

- **검진방법** : 검진기간(2024. 6월 ~11월) 중 본인 희망 일정 선택 실시
- **사전예약** : 2024. 5월 / 검진대상 소방공무원 필수 사전예약

< 정신건강진단 운영 절차 >

- ① 진료일정 확보를 위한 검진대상자 **희망 의료기관 사전 조사** (6. 5.(수)까지 [붙임 1] 제출)
 - ② 검진대상자 희망 일정 선택하여 **소방기관 월별 예약자 명단 제출** (전월 20일까지 [붙임 2] 제출)
 - ③ (1) **검진 결과 활용 동의서**,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3) **온라인 설문지** (검진 전 작성)
 - (1) 검진 결과 활용 동의서(소방기관 제출),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의료기관 제출)
 - [붙임 3, 4] 활용 작성·제출
 - (3) 온라인 검진 항목별 설문내용 [붙임 5] 참조 * 설문 접속주소 추후 배포 예정
 - ④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구비하여 **희망 의료기관 방문 검진**
- ※ (소방기관 후생·복지담당) 대상자 사전 예약 확인 및 검진 시행 여부 등 관리

○ **검진내용**

- (세부항목) 초기진찰, PTSD, 우울, 수면, 음주, 스트레스, 불안, 개인치료 등
- (사후관리) 정신건강진단 유소견자 상담·검사·진료(타과 포함) 신속 예약 및 치료 등 연계 진행

○ **비용지급** : 매월 10일 한 지급 ※ 의료기관(청구) ⇨ 본부(일괄지급)

- 병원 등급별 의료 수가 상이로 1인 200천원 이내 의료기관별 수가 적용
- * (의료기관 비용청구 서류) 청구공문, 검진명단,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결과활용**

- (소방기관) 검진 결과 활용 동의서 작성·보관 [붙임 3]
- (의료기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 작성·보관 [붙임 4]
- (의료기관 → 소방본부) 설문검진·진료·정신과 전문의 진단 등 소방본부에 결과 제출

□ **비밀보장 및 개인정보 유출방지**

- (유출방지) 검진항목 일체 비급여 수가에 해당하여 각종 보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외부기관에 개인정보 및 검사·진료기록 미통보
- 단, 의료기관은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기본법」 제16조, 제17조 의거 역학조사, 보직변경 등 행정적·조직적 보호 목적 범위 내 소방재난 본부에 전체적 결과 수치만 제공
- (의료기관) 개인 및 발주부서 동의 없이 연구 목적, 홍보 등 활용 금지

□ **정신건강진단 복무처리**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제8조의 2에 의거 검진일 반일 공가 처리

V 향후 절차 및 일정

구분	내용	일정
① 희망 의료기관 조사	출생년도 끝자리 4·9년생, 정신질환 우려자 등 검진 대상 희망의료기관 사전 조사	24. 5월
② 월별 검진 예약	소방기관 월별 예약자 명단 제출 (전월 20일까지 제출)	24. 6월~11월
③ 정신건강 진단 실시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 실시	24. 6월~11월
④ 사후관리	검진결과에 따른 이상소견자에 대한 안심협력병원 등 활용 진료지원	연중지속

VI 행정사항

- 특수건강진단 복무처리 : (정신건강검진) 반일공가
- 본부 각 과 및 종합방재센터·소방학교, 각 소방서, 특수구조단에서는 직무특성상 정신건강 장애 발생위험에 직면해 있는 소방공무원 건강 회복 지원을 위하여 시행되는 ‘소방공무원 생애주기별 정신건강진단’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주시기 바라며

희망 의료기관 사전 조사 결과[붙임 1]를 2024. 6. 5.(수)까지, 소방기관 월별 예약자 명단[붙임 2]을 시행 전월 20일까지 제출하고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진단 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관리 규정」 제19조 제2항에 의거 검진 결과 활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를 작성하여 검진 결과 활용 동의서[붙임 3]를 자체 보관하고, 검진 대상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붙임 4]를 의료기관에 제출하도록 안내하기 바람.

- 붙임 1. 검진대상자 희망 의료기관 사전 조사 서식(비번0119) 1부.
2. 소방기관 월별 예약자 명단 제출 서식(비번0119) 1부.
3. 검진 결과 활용 동의서(서식) 1부.
4.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서(서식) 1부.
5. 정신건강진단 검진항목별 설문지 1부. 끝.